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사 건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김현태 / 전 육군 대령
당 시 보 직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탄 원 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피고인과 관계	_____
탄원인 주소	_____
연 락 처	_____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법 원 주 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김현태의 항소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고의와 구체적인 실행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주시고,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죄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의 형 감경과 선처를 청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침해하려는 행위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사건일수록 각 피고인이 어떤 지시를 언제 받았으며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2. 탄원의 이유

2-1. 1심 판단을 전제로 한 항소심 심리 요청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제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로 진입하여 의사당 봉쇄와 출입 통제에 관여하고, 창문 파손을 통한 진입 및 본회의장 접근 등의 실행을 지휘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1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정입니다. 탄원인은 그러한 사실을 없는 일로 취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초 출동 지시, 국회 진입 방식의 결정, 내부 이동과 시설 관련 지시, 국회 의결 상황을 인식한 시점을 각각 나누어 증거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2. 무죄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개별적 증명

피고인이 처음 전달받은 출동 목적과 그 후 현장에서 알게 된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지휘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와 병력의 행동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위법한 목적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분명해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결과에 대한 평가와 당시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증명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창 파손, 본회의장 접근, 출입 통제 등 불리한 증거는 엄정하게 검토하되, 각각을 누가 지시하고 언제 실행했는지, 피고인이 직접 통제한 범위와 다른 이의 독자적 행동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문이 남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 배제 원칙에 맞춰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 직권남용 혐의의 개별 심리

특수임무단장이라는 직책 자체만으로 모든 부대원의 행위를 동일하게 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피고인이 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행위를 명령했는지, 그 명령의 실제 이행 정도와 어떤 권리행사 방해가 발생했는지를 각 구성요건별로 특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시의 내용·전달 시각·현장 변경 여부, 이탈·수정·중단의 현실적 가능성을 구분하여 위법성 인식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4. 유죄 판단 유지 시 예비적 선처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된다면, 피고인의 지휘권과 그 한계, 실제 발생한 결과, 독자적 기획의 정도, 군 조직의 급박한 지시 구조, 각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중단 경위를 종합하여 형의 상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특히 1심이 피고인의 사후 발언과 태도를 불리하게 평가한 사정은 재판부가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반성이나 공적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안의 범죄사실과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 적법하게 제출된 양형자료를 구별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책임에 비례하는 형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1심이 인정한 건물 진입·유리창 파손·전원 차단 등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주체와 시행 시점, 피고인이 직접 판단한 사항과 부하의 현장 대응을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시 기록에 드러난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각 행위에 필요한 범죄의 목적·고의를 평가하는 일은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공개 발언에 대한 평가와 범행의 증명, 형량에 대한 평가를 법률상 서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사정도 객관적 자료로 살피되 증거가 말해 주는 범위를 넘어서 책임을 확대하지 않는 심리를 부탁드립니다.

3. 결어

재판부께서는 피고인 김현태에게 인정된 각 행위와 범행 목적·고의의 증명을 다시 살펴주시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범위에는 무죄를, 유죄가 유지되는 범위에는 개별 책임을 충분히 고려한 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의 헌법질서와 법의 권위는 엄정한 심리와 공정한 양형을 통하여 함께 지켜진다고 믿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박도 아닌 시민의 탄원으로서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